

주일학교 교리교사 포상규정

 **전주교 청주교구 청소년시목국**

주일학교 교리교사 포상규정

2010년 12월 27일 제정

2020년 6월 29일 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천주교 청주교구 주일학교 교리교사(이하 “교리교사” 라 한다)들을 위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교리교사들의 사기를 진작 시키고 자긍심을 함양하여 ‘가르치면서도 배우는 교사’로 양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포상대상) 포상은 모범교리교사에게 주어진다.

제 3 조 (용어의 정의) 모범교리교사라 함은 근속년을 주된 기준으로 하여 기타 교리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, 성실성, 청소년에 대한 사랑, 신앙의 모범이 되는 교리교사를 말한다.

제 4 조 (교리교사의 자격) 포상 대상자인 교리교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.

1.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리교사 자격을 인정한다.
 - 1) 청주교구의 신임교리교사학교를 수료(기초과정 및 심화과정 이수)하고, 교리교사증을 소지한 자.
 - 2) 타교구(해외 포함)에서 교리교사 양성과정(교구별 규정이 다름을 인정) 이수, 교리교사증 발급, 소지자는 본인 요청 시 교구에서 교리교사증을 교체, 발급해 준다.
2.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교리교사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다.
 - 1) 첫영성체 가정교리 연수 이수자.
 - 2) 청주교구 교리신학원 수료자.
 - 3) 청주교구 선교학교(구. 사도직학교) 수료자.
3. 위의 1, 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고, 교구 내 본당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주일학교에서 교리교사로 활동하고 있어야 한다. 단, 기관에 관한 해석은 청소년사목국에서 한다.

제 5 조 (포상의 종류)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으며, 모든 조건은 모범교리교사 추천 기준일로 한다. 모범교리교사 추천 기준일은 통상적으로 1학기 주일학교 개학일로 하되, 해마다 교구에서 제시한다.

1. 3년 근속 모범교리교사 : 만 3년 이상 근속한 교리교사.
2. 5년 근속 모범교리교사 : 만 5년 이상 근속한 교리교사.
3. 7년 근속 모범교리교사 : 만 7년 이상 근속한 교리교사.

4. 10년 근속 모범교리교사 : 만 10년 이상 근속한 교리교사.
5. 15년 근속 모범교리교사 : 만 15년 이상 근속한 교리교사.
6. 25년 근속 모범교리교사 : 만 25년 이상 근속한 교리교사.

제 6 조 (근속의 기준) 근속의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.

1. 근속의 기준은 본당 주임사제가 인정하는 근속기간의 총합계로 한다.
2. 1년 단위의 근속은 반드시 당해년도 교사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.
3. 1년 이상 휴직 후 복직을 할 경우, 근속 포상은 복직 1년 후에 신청할 수 있다.

제 7 조 (교사의 등록)

1. 교구 내 본당 주일학교나 기관에서 교리교사를 하고자 하는 모든 교사는 당해 학년 초 교구의 양식과 방법에 따라 교리교사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.
2. 등록기간은 해마다 교구에서 공지한다.
3. 당해년도 교사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교사는 포상에서 제외한다.

제 8 조 (포상의 자격) 포상의 자격은 제4조 - 제6조의 자격을 기본으로 다음 각 항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. 단, 해당자는 교리교사 시작년도부터 시작하여 모범교리교사 수상 추천 이전에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, 필요할 경우에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기본 추천 조건 : 모범교리교사 추천의 기본조건은 추천일 기준, 1년 이전부터의 주일학교 출석률 80% 이상의 교사만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2. 3년 근속 모범교리교사
 - 1) 피정을 받아야 한다. 피정의 예는 아래와 같다.
 - ① 교구, 지구나 본당 단위에서 실시하는 교리교사 피정(1박 2일 이상).
 - ② 선택, 비다누에바, 성경연수, 꾸르실료, 기타 청소년사목국에서 인정하는 피정(청소년사목국에서 인정하는 피정은 사안별로 문의 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).
 - 2) 재임교리교사학교
 - ① 신임교리교사학교를 수료한 다음 재임교리교사학교(2단계/3단계)를 수료하여야 한다.
 - ② 재임교리교사학교는 2단계 과정 이수 후 3단계 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- 3) 주일학교 출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. 제출방식은 교구에서 제시하는 양식으로 한다.
 - 4) 교리교사 시작년도 :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임교리교사학교 수료 이전에 본당에서 교사로 활동한 경력도 교사 경력으로 인정을 한다.

3. 5년, 7년 근속 모범교리교사

- 1) 3년(5년) 근속 모범교리교사상 수상을 기준으로 규정한다.
- 2) 주일학교 출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. 제출방식은 교구에서 제시하는 양식으로 한다.
- 3) 수상 대상자는 교구 주관의 모범교리교사 피정에 참여하여야 하며, 모범교리교사 피정에 불참하는 교리교사는 수상에서 제외한다.

4. 10년, 15년, 25년 근속 모범교리교사

- 1) 7년(10년, 15년) 근속 모범교리교사상 수상을 기준으로 규정한다.
- 2) 주일학교 출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. 제출방식은 교구에서 제시하는 양식으로 한다.

5. 모범교리교사 포상을 단계적으로 받지 않고 다음 단계의 포상을 신청하는 경우, 적용 가능한 아래 단계의 포상 심사 조건을 적용한다.

제 9 조 (포상방법 및 부상) 포상방법은 다음 각 항과 같다.

1. 모범교리교사 포상을 행할 때에 상장, 또는 강복장(축복장)을 수여한다.
2. 모든 포상에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.
3. 근속별 포상 및 부상
 - 1) 3년 근속 모범교리교사 - 상장 및 부상
 - 2) 5년 근속 모범교리교사 - 상장 및 목주반지
 - 3) 7년 근속 모범교리교사 - 교구장 축복장 및 해외성지순례 자격 부여
 - ① 해외성지순례는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제공하며, 수상자가 선택할 수 있다.
 - ㄱ. 토래사도 해외선교체험활동
 - ㄴ. 이스라엘 등의 성지순례
 - ㄷ. World Youth Day(세계청년대회)
 - ② 위의 세 가지 기회 중 수상자는 한 유형을 한 번만 선택할 수 있다.
 - ③ 교구에서의 참가비 지원은 1인당 최대 200만원으로 하며, 참가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참가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. 또한 참가비가 20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참가비만 지원한다.
 - ④ 해외성지순례 자격의 유효 기간은 교리교사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 - ⑤ 해외성지순례 자격을 얻고 퇴직한 교리교사가 복직한 경우 해외성지순례는 복직 1년 후에 신청할 수 있다.
 - 4) 10년 근속 모범교리교사 - 교황님 강복장
 - 5) 15년 근속 모범교리교사 - 교리교사 명예의 전당 헌정 및 감사패

6) 25년 근속 모범교리교사 - 교황님 강복장 및 해외성지순례 자격 부여

제 10 조 (포상의 시기) 포상은 매년 교리교사의 날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11 조 (포상 대상자 추천)

1. 포상 대상자는 본당 주임사제나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제가 추천한다.
2. 추천에 필요한 양식은 매년 추천 공문에 첨부한다.

제 12 조 (포상 심사위원회)

1.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청소년사목국에 포상 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2. 위원회는 청소년사목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한다.
3. 위원회는 매년 교리교사의 날 이전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 13 조 (수상자 명부 작성) 포상 수상자의 명부는 청소년사목국 양식에 따라 작성, 보관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적용)

경과규정 없이 이 규정의 개정일 이전 해당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 및 규정을 적용한다.

제 3 조 (규정의 변경) 이 규정은 청소년사목국에서 사목적 판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